

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

발의연월일	2019. . .
발 의 자	이선우 의원 외 6명

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(이선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19. . .

발 의 자 : 이선우 · 강승수 · 김재우 · 김춘남
박교상 · 송용자 · 이지연 의원(7인)

1. 제안이유

최근 부모 및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아동복지를 보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라.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마.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(안 제6조)

바.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사.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(안 제8조)

아.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자. 비밀준수의 의무(안 제10조)

3. 조 례 안 : 붙임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다.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19. 10. 2. ~ 10. 10.) 결과 의견없음

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구미시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
2. “보호자”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, 후견인, 아동을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·감독하는 자를 말한다.
3. “아동학대”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
4. “아동보호전문기관”이란 학대아동의 발견, 보호,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22조제

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4조(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(이하 “예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
2.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3.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의 위원회는 「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

관한 조례」에 따른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.

제6조(예산지원)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·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, 방법 및 조건 등은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,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, 교육 및 의료적·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제8조(교육 및 홍보)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9조(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, 상담,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, 사법경찰, 의료

기관,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10조(비밀준수의 의무)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아동복지법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,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22조(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
2.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·교육·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
3.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·운영
4.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

□ 「아동복지법」 시행령

제23조(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) ①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
2.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"아동학대 신고의무자"라 한다)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·운영
3.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·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

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

-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·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(안 제6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 예산은 연평균 1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됨

4. 작성자

- 아동보육과 아동친화계 배미영(480-6562)